



제2022-032203-01-9호

안전인증서

(주)와이즈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Head mounting type Temperature Transmitter (RTD only, Single Conduit)

형식·모델(용량·등급) / 인증번호

R912***** (Ex tD A21 T85 °C) / 20-KA2BO-0477X

인증기준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15호

인증조건

1. 제조공장

·본 인증서는 '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'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.

2. 제품개요

- 제품개요: 당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된 분진방폭구조 RTD 센서 트랜스미터임.
- 제품정격: 24 Vdc, (4 ~ 20) mA
- 사용주위온도: $-25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60\text{ }^{\circ}\text{C}$
- 공정온도(센서측): $-25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s \leq +250\text{ }^{\circ}\text{C}$ (Extension Length 75 mm 이상)
 $-25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s \leq +430\text{ }^{\circ}\text{C}$ (Extension Length 100 mm 이상)
 $-25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s \leq +620\text{ }^{\circ}\text{C}$ (Extension Length 125 mm 이상)

3. 인증범위: 본 인증서는 하기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.

·R912(a)(b)(c)(d)(e)

(a)	(b)	(c)	(d)	(e)
F, G	Q, 9	0, 1, 7	D9, E9, F9, G9 E8, F8, G8, J0	3, 6, 8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당 기기는 비 폭발성 유체의 온도 측정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.
- 공정온도로 인한 분진폭발 위험지역 제품 온도상승은 최대 20 °C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함.

5. 인증(변경)사항

·1차 변경(2022.07.26): 기존 제2020-022176-01-1호에서 제조자명이 변경되어 재발행함.

6. 그 밖의 사항

- 사용자 매뉴얼 참조
-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
2020 년 06 월 22 일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